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56714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8. 6. 1.

판결 선고2018. 6. 2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02,806,789원 및 그 중 888,749,733원에 대하여는 2016. 10. 20.부터, 450,793,93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1.부터, 463,259,494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부터, 각 2017. 10. 1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9. 9. 접수 제315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9. 30. 접수 제3449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C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9. 6. 접수 제3092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327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E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9. 30. 접수 제3449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C은 E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9. 6. 접수 제3092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3276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1. 5. 27. E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5억 8,000만 원 중 4억 9,3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② 2015. 1. 2. E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③ 2016. 4. 18. E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10억 5,000만원 중 8억 9,25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E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E은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6. 2. 1.부터 정한 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E은 2016. 9. 26. 수원지방법원에 2016회합10042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신한은행은 2016. 10. 4.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0. 20. 우리은행에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897,992,603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9,242,870원을 회수하였고, 2016. 10. 21. 신한은행에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452,766,530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1,972,600원을 회수하였으며, 2016. 10. 2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65,306,174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2,046,68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32원이다.

1차	2,046,680	2016. 10. 24. ~ 2016. 10. 24.	1	10%	560
2차	1,972,600	2016. 10. 21. ~ 2016. 10. 21.	1	10%	540
3차	9,242,870	2016. 10. 20. ~ 2016. 10. 20.	1	10%	2,532
합계	3,632				

라. 피고 A는 2016. 8.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6. 8. 4.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2016. 9.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016. 9. 9.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1) 피고 A는 2016. 8. 30. 별지 목록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6. 8.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6. 9.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주문 제3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016. 9. 6.자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피고 A는 2016. 9.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6. 9. 2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6. 9.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3의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016. 9. 21.자 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피고 C은 2016. 9.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주문 제3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016. 9. 30.자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바. 1) E은 2016. 8. 22.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6. 8.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6. 9.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주문 제4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016. 9. 6.자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E은 2016. 8.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6. 8. 22.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6. 9.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4의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016. 9. 21.자 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피고 C은 2016. 9.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주문 제4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016. 9. 30.자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A, D: 자백간주(민사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802,806,789원[= 463,259,494원(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465,306,174원 - 회수금 2,046,680원) + 450,793,930원(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452,766,530원 - 회수금 1,972,600원) + 888,749,733원(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897,992,603원 - 회수금 9,242,870원) + 확정 지연손해금 3,632원] 및 그 중 888,749,733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6. 10. 20.부터, 450,793,93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6. 10. 21.부터, 463,259,49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6. 10.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10. 1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사자인 E에 대하여 위 2.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1,802,806,789원 및 그 중 888,749,733원에 대하여는 2016. 10. 20.부터, 450,793,93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1.부터, 463,259,494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부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3)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8. 4.부터 2016. 9. 20.까지 원고의 E,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E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6일 내지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 9. 26.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E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0. 20. 우리은행에, 2016. 10. 21. 신한은행에, 2016. 10. 2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E,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8,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2016. 8. 4.자, 2016. 9. 20.자 각 매매계약 및 2016. 8.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8. 4.부터 2016. 9. 20.까지 피고 A의 소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78,157,000원 이상인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시가 4억 7,500만 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을 뿐이어서 그 가액이 8억 2,500만 원(= 3억 5,000만 원 + 4억 7,5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사실, ② 이 사건 2016. 8.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 8. 22.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22. 당시 E의 소극재산은 합계 6,757,535,000원 상당인 반면, 적극재산은 합계 1,387,635,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1	농업협동조합	2011. 12. 9.	114,000,000	대출채무
2	우리은행	2013. 10. 30.	242,770,000	대출채무

1	농업협동조합	2011. 12. 9.	114,000,000	대출채무
3	중소기업은행	2009. 10. 3.	1,486,600,000	보증채무
4	국민은행	2009. 9. 23.	237,500,000	보증채무
5	우리은행	2009. 8. 19.	510,661,000	보증채무
6	신한은행	2015. 1. 2.	60,000,000	보증채무
7	서울보증보험	2016. 6. 21.	50,000,000	보증채무
8	중소기업진흥공단	2015. 9. 10.	200,000,000	보증채무
9	하나캐피탈	2015. 5. 20.	5,723,000	보증채무
10	효성캐피탈	2015. 3. 31.	134,664,000	보증채무
11	디지털캐피탈	2015. 8. 31.	236,239,000	보증채무
합계	3,278,157,000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피고 A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A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2016. 8. 4.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2016. 8.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 9. 20.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E이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2016. 8.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 8. 22.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A는 E의 사내이사인 점, E의 회생신청 시점 및 앞서 본 E, 피고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E,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와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의 주장 요지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E,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실이나 위 각 계약 체결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피고 B, C의 선의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이 사건 2016. 8. 4.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C은 이 사건 2016. 9. 20.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6. 8. 22.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소유권보존등기가 생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 A와 사이에 추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우선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생성되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이전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 4억 7,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중개인 없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B, C이 피고 A와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16. 8.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2016. 9. 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16. 8.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 9. 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2016. 9. 30.자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2016. 9. 6.자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2016. 9. 21.자 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E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16. 8.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 8. 22.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2016. 9. 30.자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E에게, 이 사건 2016. 9. 6.자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2016. 9. 21.자 2차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문혜정

판사성재민

판사편병호

별지